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62

발의연월일: 2021. 10. 15.

발 의 자: 추경호·김용판·서일준

정운천 · 윤창현 · 박대수

정진석 · 이종배 · 최춘식

홍문표 · 임이자 · 박완수

유의동 · 김예지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는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시행령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요건(2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와 잦은 가축질병, 농촌인구 고령화로 농업분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가축이 포함되지 않아 축산농가의 영농승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15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가축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15억원"을 각각 "50억원"으로 하고, 같은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 용한 자산의 가액
 -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 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 4)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5)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 6)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 7)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 8)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
	승)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②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	,,
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	
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	
용하지 아니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2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	<u>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u>
이 <u>15억원</u> 을 초과하는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
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 <u>50억원</u>
	<u>50억원</u>
<u><신 설></u>	<u>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u>
	영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u>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u>

-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 산의 가액
- 1)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 지
- 3)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 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13조에 따른 산 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 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 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 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

<u>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u> <u>다)</u>

- 4) 「어선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어선
- 5)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대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 6)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 고·저장고·작업장·퇴비 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7) 「소금산업진흥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염전
	8) 「축산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축
<u><신 설></u>	<u>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u>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
	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
③ ~ ① (생 략)	③ ~ ① (현행과 같음)